


# 군산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

## □ 시내권(1급지)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

롯데몰 옆 (조촌동 2-8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유료화 시기) 2022. 1월부터 추진</li> <li>○ (이용시간) 24시간 (탄력적 조정)</li> <li>○ (이용요금) “군산시 주차장 조례 1급지 주차요금 적용”</li> <li>○ (운영주체) 군산시 교통행정과</li> <li>○ (주차대수) 총 63대</li> </ul>
	

### ○ 주차요금

- 주차장 이용요금 적용 : “군산시 주차장 조례” 별표 1 적용

▶ 1회 주차시 30분 이내 (소형 기준) : 500원

▪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※ 회차 : 10분 미만 무료

(단위 : 원)

금지 구분	구분	1회 주차요금		1일 주차요금 (5시간이상)
		기본최초 30분이내	30분 초과 매10분마다	
1급지	소형	500	200	6,000
	대형	600	300	9,000

※ 소형 - 승용차,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, 2.5톤미만 화물자동차

※ 상업지역으로 주차의 회전을 향상을 위해 **월정기 주차 미시행**

## □ 시스템 운영 주요내용

○ (요금 정산 방법) 신용카드, 모바일 앱, 주차권(지류)

- 신용카드, 모바일 앱 : 현금 사용 불가

○ (요금 감면) 군산시 주차장 조례 감면대상자

- 주차장 요금정산기에 있는 **콜센터 버튼**을 누르고 통화 후 감면 결제

○ (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발생 처리) 1588-5783, 063-454-3772~6

## □ 주차장 이용권 구매 안내

- (이용권 구매 절차) 주차 이용권 구매 문의 시 별도 안내 예정



## □ 참고자료

구글플레이, 앱스토어 - 아이파크킹/주차할인	1시간 이용권(종이류) 1,100원	2시간 이용권(종이류) 2,300원
<p>운전자용 APP      관리운영 APP/WEP</p>		

※ 2시간 이용시 1시간권 2장으로 이용 불가

## □ 관광지(도시지역)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

선유2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유료화 시기) 2019. 7월부터 시행</li> <li>○ (이용시간) 09시 ~ 18시</li> <li>○ (이용요금) “군산시 주차장 조례 주차요금 적용”</li> <li>○ (운영주체) 군산시 교통행정과</li> <li>○ (주차대수) 총 331대</li> </ul>
장자1, 2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유료화 시기) 2019. 7월부터 시행</li> <li>○ (이용시간) 09시 ~ 18시</li> <li>○ (이용요금) “군산시 주차장 조례 주차요금 적용”</li> <li>○ (운영주체) 군산시 교통행정과</li> <li>○ (주차대수) 총 145대</li> </ul>

### ○ 주차요금

- 주차장 이용요금 적용 : “군산시 주차장 조례” 별표 1 적용

▶ 1회 주차시 30분 이내 (소형 기준) : 1,000원

▪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300원 ※ 회차 : 10분 미만 무료

(단위 : 원)

급지 구분	구분	1회 주차요금		월정기주차요금			1일 주차요금 (5시간이상)
		기본최초 30분 이내	30분 초과 매10분마다	주간	야간	주야간	
도시지역	소형	1,000	300	-	-	-	10,000
	대형	2,000	500	-	-	-	16,000

※ 소형 - 승용차, 16인승 미만 승합자동차, 2.5톤미만 화물자동차

▶ 도시지역 내 주차장의 경우 상가에서 10,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 요금부터 적용한다. 단, 도시지역 내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이 확인된 경우 숙박1일당 익일 14시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

## □ 주차요금 감면 (군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1)

- 시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(10부제운행등)에 참여하는 차량과 「주차장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-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써 국세청장 또는 군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 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 수첩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(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,제6호, 제10호,제12호,제14호 및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(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(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)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- 주차요금 산정시 10분 단위로 산정하되,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분으로 보며, 총 주차시간이 10분이내인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

-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(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)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,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.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변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- 도서지역 내 주차장의 경우 상가에서 10,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 요금부터 적용한다. 단, 도서지역 내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이 확인된 경우 숙박1일당 익일 14시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